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관련 조항 정비 등〉

- 김용민·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64호)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14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2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비교	5
2. 제2편제1장(수사):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 삭제	18
가. 검사의 수사권 삭제	18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	27
3. 제2편제1장(수사): 검사 수사권 삭제에 따른 제도 보완	35
가. 수사원칙 및 수사 시 준수사항	35
나.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44
다. 구속기간 변경	48
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정	55
마.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수사절차 신설	62
바. 공소심의회 설치	65
사.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	74
아. 재정신청제도 개선	80
자. 명칭변경	93

4. 제1편(총칙) 및 제2편제3장(공판) 등: 검사 관련 권한 삭제	95
5. 수사절차 관련 신설 내용	98
가.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신설	98
나. 압수·수색 시 참여권 구체화	108
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115
라.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신설	119
6. 부칙	122
1) 시행일	122
2)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23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4
4)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정비	125

I. 제안경위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 박은정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6. 26.

다. 회 부 일 : 2025. 7. 1.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6. 30.

다. 회 부 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체포·구속·압수·수색·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

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제198조·제238조·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2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비교

□ 발의 배경

2개 법률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입법정책 방향에 맞추어 형사소송 절차에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취지임.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관련 법체계로는 공소청 설립배경 및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정책 방향에 맞게 형사실무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두 법률안이 발의된 것임.

□ 김용민·박은정의원안(제2219564호) 주요내용 및 체계

1) 수사의 주체 일원화 및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안 제195조, 제196조 등)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함

2)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함(안 제196조)

3)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피의자의 메모권 보장,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 보장, 피의자 진술의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등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를 강화함

4) 영장제도 개선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서의 피의자·변호인 송부 의무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압수·수색영장 심리 절차 신설 등 영장제도를 개선함(안 제201조, 제201조의3, 제215조의2 등)

5) 공소심의회 신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246조의3 내지 제246조의7)

6) 재정신청 제도 개편·피의자 재정신청권 신설

재정신청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재정신청 결과 재수사 결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60조, 제262조 등) 또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8조의2)

7) 기관 명칭 정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의 개정대상 조문체계]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수사원칙	제195조 수사의 기본원칙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삭제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제84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15조 영장의 집행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 준용규정 제196조 검사의 수사 삭제 →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 제198조 준수사항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 긴급체포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6 준용규정 제201조 구속 및 조건부 석방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 제203조의3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제209조 준용규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 조문 삭제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 준용규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41조 피의자신문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 준용규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2항 신설)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 조문 삭제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312조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417조 동전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조건부석방 구속 제도 신설	제73조 영장의 발부 제2항, 제3항 신설 제201조 구속 및 조건부 석방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권리 강화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예의 통지(제2항 신설) 제123조의2 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제123조의3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제130조의2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제196조 수사인권보호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사건 타관송치 이첩 의무화	제197조의5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 결정의 고지 의무화	제201조의3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및 송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신설	제215조의2 압수·수색의 심리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기재사항 강화	제215조의3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제3항 각호, 제4항, 제6항, 제7항 신설)
피의자진술의 녹음 의무화	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녹음·영상녹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확대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공소심의회 신설	제246조의3 공소심의회의 설치 제246조의4 심의의 신청 및 시기 제246조의5 심의절차 등 제246조의6 의결 등 제246조의7 재정신청과의 관계 등
피의자 재정신청 신설 및 재정신청권자 확대	제258조의2 피의자의 재정신청 제260조 재정신청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신설	제264조의3 공소유지담당변호사
공소권남용이론 법제화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제2호, 제3호 신설)
기타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246조의2 검사의 객관의무 제262조의2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262조의3 비용부담 등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4조의2 공소제기의 의제 등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명칭변경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62조 검사에 의한 송달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56조 타관송치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 집행지휘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 동전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 차규근의원안(제2219614호) 주요내용

1) 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 원칙 명시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적법절차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의 조화를 명시하는 신설 조항을 두고, 불구속수사·임의수사 원칙, 별건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 2, 제195조의3)

2) 검사 수사권 관련 조항 정비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제197조의4)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제245조의9)을 삭제함

3) 수사 주체 관련 조항 정비

피의자신문·체포·구속·압수·수색·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함

4)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조항 정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45조의10)

5) 기관 명칭 정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관할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

[차규근의원안 개정대상 조문체계]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수사원칙	제1조 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 제195조 수사의 기본원칙 제195조의2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제195조의3 피해자 보호 제196조 상호협력의 원칙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삭제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1항 삭제 제84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제115조 영장의 집행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제138조 준용규정 <u>제196조 검사의 수사 삭제</u> → 상호협력의 원칙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3 긴급체포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1조 구속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제209조 준용규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제213조의2 준용규정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9조 준용규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조문 삭제 제241조 피의자신문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 준용규정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 조문 삭제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312조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417조 동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명칭변경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62조 검사에 의한 송달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구 분	개정 대상 조문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56조 타관송치 제260조 재정신청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 집행지휘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 동전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법률안 비교

2개 법률안은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를 핵심으로 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김용민·박은정의원안 및 차규근의원안 주요내용 비교]

구 분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차규근의원안
수사 기본원칙	수사의 기본원칙을 제195조에 규정 (수사 주체 사경으로 일원화, 공정·신속 수사, 실체적 진실 발견 등) 보완수사요구 미이행 시 징계요구권 삭제(제197조의2)	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 원칙을 제1조에 신설하고, 수사 기본원칙을 제195조부터 제195조의3에 규정 (수사 주체 사경으로 일원화, 불구속수사 원칙, 임의수사 우선 원칙, 별건수사 금지 등)
검사·사경 관계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불가 명시(안 제195조제5항), 검사와의 협력 규정(제4항)	현행 제196조(검사의 수사)를 상호협력 원칙 규정으로 개편
수사인권보호관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안 제196조)	규정 없음
영장제도	구속영장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감축(각 10일→각 7일, 안 제202조 내지 제203조의2), 조건부 석방 제도, 구속영장 결정서 송부 의무화, 압수·수색 심리 절차 신설,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등	구속영장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 등
공소심의회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 신설 (안 제246조의3 내지 제246조의7)	규정 없음
공소유지담당 변호사	각 법원에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지정 등(안 제264조의3)	규정 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권 확대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안 245조의7)	현행 유지
재정신청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 재수사 결정 가능, 피의자 재정신청권 신설(안 제258조의 2)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
피의자 권리	메모권, 변호인 조력 강화, 진술 녹	현행 유지

구 분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차규근의원안
	음 의무화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사 지휘 규정 삭제, 개별 법률로 위임	검사 지휘 규정 삭제, 개별 법률로 위임

구체적 내용을 비교하면, 두 법률안은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및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동일하나,

차규근 의원안의 경우 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 원칙(안 제1조), 불구속수사 원칙(안 제195조제2항), 임의수사 우선 원칙(안 제195조의2), 별건수사 금지 원칙(안 제195조제7항), 피해자 보호 의무(안 제195조의3) 등 수사 시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신설하고 있을 뿐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219조, 제222조의 경우 검사의 참여권을 배제하고 있음.

반면,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수사의 기본원칙 이외에도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신설(안 제196조), 보완수사요구 미 이행시 징계요구권 삭제(제197조의2), 조건부 석방 제도 신설(안 제201조제5항 내지 제12항), 수사기관의 구속기간(각10일→각 7일) 감축(안 제202조 내지 제203조의2), 압수·수색 심리 절차 신설(안 제215조의2),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21조의5), 진술 녹음 의무화(안 제244조의2),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안 제245조의7), 공소심의회제도 신설(안 제246조의3 내지 제246조의7), 피의자 재정신청권 신설(안 제258조의 2),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제도 신설(안 제264조의3) 등 제도를 개정·신설하고 있음.

2. 제2편 제1장(수사):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 삭제

가. 검사의 수사권 삭제

1) 현행 검사의 수사권 조항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편(제1심)제1장(수사)에 수사권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수사 준수사항, 피의자에 대한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절차, 제3자에 대한 수사절차, 변사자 검시 및 고소·고발, 피의자 신문 방법,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제196조¹⁾(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196조제2항은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근거 조항임. 2021년 「형사소송법」(2022년 개정사항 포함) 및 「검찰청법」 개정에 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권, 즉 인지 등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일정한 범죄로 제한되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두 개정안은 제2편 제1장의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196조(검사의 수사)의 내용

1)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2. 5. 9.>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헤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 5. 9.> [전문개정 2020. 2. 4.]

[제19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6조는 제197조로 이동 <2020. 2. 4.>]

을 삭제(전부개정)함으로써 검사에게 일체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2) ‘검사 수사권 삭제’ 법률안 분석

두 법률안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피의자 출석요구 및 신문, 압수물 관리, 고소·고발 수령 등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였음.

그에 따라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뿐 수사를 할 수 없음. 다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 수사 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경우 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제245조의8)을 할 수 있음.

구체적인 두 법률안의 수사권 조정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와 같음.

[수사권 개정 조문 및 주요 변경내용 비교 2)]

현행 조문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의원안
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u>기존 검사와 사경의 수사 협력의무 조항 삭제,</u> 수사의 기본원칙 조항으로 변경	<u>기존 검사와 사경의 수사 협력의무 조항 삭제,</u> 수사의 기본원칙 조항으로 변경
제196조 <u>검사의 수사</u>	기존 <u>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 조항을 삭제,</u> 검사와 사경의 상호협력원칙으로 변경	기존 <u>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 조항을 삭제,</u> 수사인권보호관제도로 신설

2) 구체적 사항은 별지 [참고자료] 법률안 조문 대비표 참조

현행 조문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현행 유지(징계요구권 유지)	검사에게 사경의 보완수사 이행여부 관리 의무부여, 보완수사 미 이행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권 삭제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	검사의 송치요구권 조항 삭제 (징계요구권 유지)	검사의 송치요구권 유지,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 하도록 규정,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권 삭제
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	검사의 송치요구권 조항 삭제	<u>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신설</u> 하여 조정
제198조 준수사항	조항 삭제	수사과정 준수사항에서 검사 삭제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송치요구권 삭제	감찰을 점검으로 용어변경, 송치요구권 삭제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출석요구권자에서 검사 삭제	출석요구권자에서 검사 삭제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검사의 영장 직접청구권한 삭제(경찰의 신청을 요함)	검사의 영장 직접청구권한 삭제(경찰의 신청을 요함)
제200조의3 긴급체포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기간	검사의 긴급체포권 삭제, 검사의 체포 사후승인을 사경의 통보로 변경	검사의 긴급체포권 삭제, 검사의 체포 사후승인을 사경의 통보로 변경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피의사실 고지 주체에서 검사 삭제	피의사실 고지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00조의6 준용규정	현행 유지	체포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01조 구속	검사의 영장 직접청구권한 삭제(경찰의 신청을 요함)	검사의 영장 직접청구권한 삭제(경찰의 신청을 요함)
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	피의자 인치 기간을 사건 송치 기간으로 변경	사경 및 검사 구속기간 축소 (각 10일→각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기간(각 7일) 신설(제203조의2)
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검사 연장 신청 시 사경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현행 조문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신청을 요함	재수사요청에 한하여 7일 이내 연장
제208조 재구속의 제한 제209조 준용규정	구속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구속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현행 유지	조문 삭제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213조의2 준용규정	현행범인 인수 주체에서 검사 삭제	현행범인 인수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구속 주체에서 검사 삭제	체포·구속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 니한 강제처분	압수·수색·검증 집행 주체 에서 검사 삭제	압수·수색·검증 집행 주체 에서 검사 삭제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 니하는 강제처분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및 사경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도록 규정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 니한 압수	유류·임의제출물 압수 주 체에서 검사 삭제	유류·임의제출물 압수 주 체에서 검사 삭제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물 환부 결정 주체를 사경으로 변경	압수물 환부 결정 주체를 사경으로 변경
제219조 준용규정	압수·수색·검증 집행 주체 에서 검사 삭제	압수·수색·검증 집행 주체 에서 검사 삭제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검사의 제3자 출석요구권 삭제	검사의 제3자 출석요구권 삭제 및 제3자의 녹음·영 상녹화 요청권 신설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경찰은 검사와 협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경찰의 신청, 감사의 청구를 통해 감정위촉·감정유치	경찰의 신청, 감사의 청구를 통해 감정위촉·감정유치

현행 조문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사경이 하도록 변경	사경이 검시하고 검사에게 통보 및 상호 의견 교류
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	사경이 하도록 변경	사경이 하도록 변경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고발 수령 주체에서 검사 삭제	고소·고발 수령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조문 삭제	신속히 조사 후 검사에게 증거물등 송부의무 삭제
제241조 피의자신문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u>검사의 피의자 신문권 삭제</u>	<u>검사의 피의자 신문권 삭제</u>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 준용규정	사경이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및 수사과정에 참여 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사경이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및 수사과정에 참여 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현행 유지	수사과정 입수·작성한 자료 목록 작성 및 송부의무 신설(제2항 신설)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	현행 유지	검사의 재수사 요청 기간(90일) 및 재수사 기간(3개월 이내) 신설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조문 삭제	조문 삭제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현행 조문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찰관리	관한 사항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위임	검사 지휘권한 삭제

3) 검사 보완수사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견해

제196조제1항 및 「검찰청법」에 따른 일정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소관으로 변경된 반면, 제196조제2항에 따른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삭제되는 것에 대하여 찬반론이 있음.

- 보완수사권 ‘폐지’ 의견

검찰의 권한 남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하는 것인바, 검사의 보완수사 허용 시 공소청에 수사 인력이 남아, 결국은 검찰권의 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음³⁾.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하며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경우, 원래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범위를 넘어 무관한 다른 범죄 혐의를 캐내는 별건수사나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표적수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⁴⁾.

3) 2026. 3. 27.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발제문 98면-100면.

4) 조기영,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2019.4.), 51면.

검사가 직접 수사로 범죄를 입증하려는 역할을 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유죄 입증에 치중하게 되어 법관과 유사한 수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⁵⁾.

-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을 위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필요함. 공소시효 압박, 증거의 휘발성 등 시급한 상황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사건 지연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할 수 있음⁶⁾.

검사가 직접 관련자를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수사기법이며, 기소 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음⁷⁾.

사안이 명백하거나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충함으로써 수사기관 간의 사건 송부 기간을 단축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절차적 경제성이 있고⁸⁾, 수사미진의 경우 기소를 결정하는 주체가 증거의 공백을 직접 채움으로써, 수사의 결점을 효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음.

5) 조기영, 앞의 논문, 45면; 서보학, 앞의 논문, 90면-91면.

6) 2026. 3. 27.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발제문 120면.

7) 정중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론과 형사사법상 통제공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제37권 제3호(2025.10.) 237면.

8) 이창현,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3호(2025), 101면-102면.

4)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여,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요청됨.

첫째, 검사 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경우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공백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제도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요구, 사건기록 검토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건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적 면담, 임의제 출물 수령 등이 가능한지 불명확하여 개정문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송치 기록상 다른 범죄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검사에게 수사기관 통지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지 등도 수사실무를 고려하여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음.

둘째, 개정안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존치하고 있음. 다만,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담당하던 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의 업무량으로 보충되어야 하는데,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

되면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수사절차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에 의존하여 공소 여부를 결정하게 됨.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거나 특정 피의자가 범죄사실이 복수인 경우 등 병존사건에서 일부 송치 및 일부 불송치할 때에 기록만으로는 사건의 일부 누락 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위법·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기록이 부실 작성되거나 쟁점 누락 시 은폐된 범죄사실이나 배후 관계를 확인하기도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병존사건 등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가 충분한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요청됨.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형사사법 절차에 구현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을 통해 종전의 검사 수사권에 의해 보장하였던 증거 등 검사의 수사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하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긴밀히 수사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피의자·피해자 측에 통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

1) 주요내용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 미이행 사경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하고, 사경이 시정조치요구 미이행 시에도 송치요구를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하며, 불송치결정 사건 송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5조,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8),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한을 삭제하며 사법경찰관의 규정(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5조의10).

차규근의원안은 검사의 사경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송치요구권 삭제), 재수사요청 제도를 유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97조의3, 제245조의10).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차규근의원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u>사법경찰관</u> 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 <u>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u> ----- ----- <u>. 이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u>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 공소청----- ----- ----- ----- ----- ----- ----- ----- ----- -----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생략)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97조의3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	⑤ (현행과 같음)	<삭제>

<u>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⑦ <u>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u> 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⑥ ----- ----- -----<u>. 이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u> ⑦ <u>각급 공소청의 장</u>----- ----- -----<u>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u>----- -- <u>직무배제 또는 교체를</u> ----- ----- <u>있다.</u> ⑧ ----- ----- -----<u>제196조에 따른 수사인</u> <u>권보호관에게</u> -----	<삭 제> ⑦ ----- <u>지방공소청장</u>----- ----- ----- ----- ----- ----- ----- ----- --. ⑧ (현행과 같음)
---	--	--

<u>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신 설></u>	--.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 ----- ----- ----- -----. <u>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u>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u>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u> 2. <u>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u> ③ <u>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u>	제245조의8 (현행과 같음)
--	---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신 설></u>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 ① (생 략)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	<u>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u> <u>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u> <u>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u> <u>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u> ④ ----- -----. <u>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u> ⑤ <u>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u>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 ----- <u>증거를 수사한다.</u>	제 245 조 의 10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삭 제></u>
--	--	--

<u>여 수사를 개시·진행 하여야 한다.</u> ④ <u>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⑤ <u>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u> ⑥ <u>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④ <u>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u>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경합 시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권(제197조의4), 수사과정의 위법·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권(제197조의3), 영장 청구(제211조의2 등) 및 집행지휘권 등을 통해 검사의 사경에 대한 위법수사 또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였음.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르도록 하며,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검토의견

첫째,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를 불이행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뿐 징계요구권을 삭제하여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강제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한 강제력이 약화되는 경우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⁹⁾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보완수사요구 등에 관하여 제도보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시정조치요구 불이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197조의3).

시정조치요구는 사경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행사되는데, 사경의 위법행위 시정을 해당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불송치결정 사건에 관하여 재수사요청할 수 있으나 재수사 결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현행 수사준칙에 따라 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는 재수사내용에 관

9)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 “[단독] ‘1억 사기’에 보완수사 4차례 요구… 김·경 ‘핑퐁’에 피해자 피눈물”, 2026.05.17.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9007742&code=11131100&cp=nv>)

한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지 않으며 재수사 요청이 1회로 한정되는바 불송치 결정의 유지 시에도 기록 송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재수사요청에 대한 수사결과가 미흡한 경우 다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분야의 행정 전문가이지만,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 (제245조의10제5항), 현재는 불송치결정 제도가 없으나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제245조의5제2호)이 가능해짐. 즉, 특별사법경찰관을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규율하여 적법절차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제2편 제1장(수사): 검사 수사권 삭제에 따른 제도 보완

가. 수사원칙 및 수사 시 준수사항(안 제195조·제198조 등)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사경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사경 직무수행을 금지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95조). 또한, 검사·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있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198조 중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등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 출석요구를 해서는 아니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규정함(안 제198조).

차규근의원안은 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 원칙을 제1조로 규정하고, 불구속수사·임의수사 원칙, 별건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도입하며, 안 제198조를 삭제함.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차규근의원안
<신설>		제1조(형사소송의 이상과 적법절차의 원칙) ①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절차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생략)	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현행과 같음)	제1조의2(管轄의 職權調査) (현행 제1조와 같음)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수사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한다.	제195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고, 그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협력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

	<u>할 수 없다.</u> ⑥ <u>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을 발견해야 한다.</u> 1. <u>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u> 2. <u>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u> 3. <u>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u> ⑥ <u>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u> ⑦ <u>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u> <u>제195조의2(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u>
--	--	---

<신 설>

<신 설>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95조의3(피해자 보호)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

제19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리-----

----- 알게된

-----.

③ 사법경찰관리-----

-----.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삭 제>

진을 부당하게 수사하여
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
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
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
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
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되며, 출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
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해서
는 안된다.

<신 설>

⑦ 각급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
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
거나 출국금지 사유가 없
어졌을 때에는 즉시 출국
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
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수사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 방향에 맞추어 준수사항의 주체를 정비하고, 자백 강요 목적의 반복 출석요구, 장시간·심야조사 등 위법·강압수사를 법률 차원에서 통제하여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출국금지·출국정지 조치가 수사 편의적으로 남용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청됨.

(1) 차규근의원안 제195조의3의 출석요구·장시간조사 등 관련 내용 중 대부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¹⁰⁾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¹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상향입법하는 내용인바, 인권보장의 핵

10)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9조(심야조사 제한) ① 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야조사의 제한 시간을 준수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장시간 조사 제한 등)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항을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은 긍정적인임.

다만, 안 제195조의3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로 규정하여 구체적 기준을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과 같은 인권보장의 원칙적 사항은 그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조사시간의 구체적 기준이나 예외사유 등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제195조의3제7항의 출국금지·출국정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¹²⁾ 수사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현행 제198조에 출국금지·출국정지의 요청 및 해제요청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12)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계상 적절한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수사인권보호관 신설(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196조)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 형태의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수사 및 영장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정 요구, 수사관 교체 권고,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u>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u> <u>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u>	<u>제196조(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다만,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u> <u>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권고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

	④ <u>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인권 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u> ⑤ <u>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개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권한 비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단계 전반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Procedural Law)인바, 수사인권보호관과 같은 특정 직위를 신설하고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의 사항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직제(職制)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그 중 해당 직위의 신분보장이나 임기 등과 같이 법률로 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의 경우에도, 이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기보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수사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조직 관련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2026. 3. 4.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¹³⁾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직제에 반영하겠다는 의견 등이 반영되어,¹⁴⁾ 2026. 10. 2. 시행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인권보호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안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7항 및 제8항은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직무배제 또는 교체” 요구로 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기존의 “검사”가 아닌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함.

- 13)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39호)
제28조(수사인권보호관) ① 수사과정(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중수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둔다. 다만, 중수청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사인권보호관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관할 중수청의 장에게 인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사인권보호관은 수사에 대하여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민원이 이유 있을 경우, 관할 중수청장에게 수사 방식의 변경 또는 수사관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수사인권보호관은 제19조에 따른 수사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중수청장은 수사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⑥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제433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6년3월16일) 회의록 발제

○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나머지 수사인권보호관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법률보다는 직제에 반영해서 아마 인권보호수사규칙 같은 것도 제정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조문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는 취지이나, 현행 사법 체계 내 이미 다양한 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직적 측면에서,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고,¹⁵⁾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인권보호업무 등을 수행함.¹⁶⁾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준항고(제417조),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점검(제198조의2) 등의 제도가 운용 중인바, 기존 제도들과의 기능적 중복을 피하고 수사인권보호관만의 독자적인 신설 실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아울러 안 제196조제1항은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그 적용 범위에 일선 경찰관서나 소속 특별사법경찰조직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9조(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① 수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한다.

1.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 지청장

1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다. 구속기간 변경(안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3조의3, 제205조, 제208조, 제209조)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사법경찰관·검사의 구속기간 및 구속기간 연장 가능 기간을 각각 7일로 단축하고, 구속기간 연장을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계속해야 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며(안 제202·203·205조),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3조의2 신설).

차규근의원안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현행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했던 구속기간의 연장을,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개정함(안 제205조).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차규근의원안
第202條(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 以内に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 -----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
第203條(檢事の 拘束期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제203조(검사의 구속기

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
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 때에는 10
日 以内に 公訴를 提起
하지 아니하면 釋放하
여야 한다.

<신 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
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
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
니하면 석방하여야 한
다.

제203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구속
기간과 그 연장)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
법”이라 한다) 제3조제
1항제2호 이외의 범죄
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검사(이하 “공수처
검사”라 한다)가 피의
자를 구속한 때에는 7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
사에게 인치하지 아니
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공수처법 제3조 제1
항 제2호의 범죄로 공
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7일 이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공

간) -----사법경찰관
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피의자를 석방
하여야-----.

②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必要를 인정할 수 있는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 못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사법경찰관----- ----- ----- ----- ----- ----- -----.
② (생 략)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u> 구속에 관하여 준	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준용규정) ----- ----- ----- ----- ----- ----- ----- ----- ---- <u>사법경찰관</u>----- ----- ----- . <u>이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용한다. <후단 신설>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 경찰관리'로 본다.
--------------	--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나,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회(10일) 연장을 허용하여 총 30일까지의 구속이 가능함(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최장 7일, 검찰에서는 14일(기본 7일+1회 연장 시 7일) 등 총 21일까지로 단축하고, 구속기간 연장 조건을 보완수사요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기 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수처검사의 구속기간을 신설하는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03조의2는 일반 형사절차의 구속기간 단축 기조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구속 정한과 연장 요건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범죄¹⁷⁾의 경우 7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기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소권이 있는 범죄¹⁸⁾는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되 지방법원판사에 신청하여 1회(7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 형사절차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수사기관 구속기간이 7일로 단축될 경우,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수사와 피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그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제200조의2제5항, 제200조의4제1항),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되 특별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18)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되어 있는바(제201조의2제1항), 체포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는 신병확보 절차에만 실무상 수일이 소요됨.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구속기간이 7일로 단축될 경우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구속상태에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구속기간이 만료될 우려가 있음.

이 경우 부실한 수사가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전체적인 수사 및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나아가 피의자로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제약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구속기간 단축의 취지를 고려하되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정(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21조의5)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영장심의위원회를 각 광역공소청에 두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명시하며, 광역공소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221조의5).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차규근의원안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u>지방검찰청</u> 소재지를 관할하는 <u>고등검찰청</u> 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 ----- ----- ----- ----- ----- <u>지방공소청</u> ----- ----- <u>광역공소청</u> ----- ----- -----.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 ----- ----- ----- ----- ----- ----- ----- <u>지방공소청</u> ----- ----- <u>광역공소청</u> ----- ----- -----.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u>고등검찰청</u> 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u>광역공소청</u> ----- ----- ----- -----.	② ----- ----- ----- <u>광역공소청</u> ----- ----- -----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 11명 이내
의 -----
----- 광
역공소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

1. 관할 구역 광역공소청장이 추천하는 1명
2.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1명
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추천하는 1명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천하는 1명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7.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변호사 자격
을 가지지 아니한 사
람 4명

-----.

③ -----

-----광역공소청장-----
-----.

<u><신 설></u>	<u>④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u>	
<u>④ (생 략)</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④ ~ ⑤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⑥각 광역공소청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 방공소청의 장과 심의 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 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심 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 원 수, 심의의견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 록에 편철해야 한다.</u>	
<u><신 설></u>	<u>⑦담당검사와 사법경찰 관은 심의위원회의 심 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u>	
<u>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u>	<u>⑧ ----- ----- ----- 대통령령-- -----.</u>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각 고등검찰청에 두는 하는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현행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 후보단에서 추천 등 무작위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함.¹⁹⁾

개정안은 2026. 10. 2. 시행예정인 「공소청법」에 맞추어 심의위원회를 각 ‘광역공소청’에 두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확대하며 그 구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심의 결과 존중 의무를 규정하여 영장 청구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 2026. 10. 2.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제21조²⁰⁾에서 각 광역공소

19)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천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 「공소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2. 공소 제기 여부

3. 상소 제기 여부

4.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검사 또는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제1항제1호)를 심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설치단위(광역공소청)와 기능상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물론 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반면,²¹⁾ 사건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까지 폭넓게 심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결국,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라는 점에서는 두 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공소청법」상 사건심의위원회와의 기능적 중복을 조정하고 두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제도는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후보단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전 로비 가능성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천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방법 및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⑧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노태악 편집대표, 전게서, p.530.

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위원의 구성을 법률로써 정하는 방식의 경우 위원명단이 사전에 노출됨에 따라 심의의 객관성과 수사기밀 유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추천인	인원수	위촉
관할 구역 광역공소청장	1	각 광역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	
대한변호사협회장	1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1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4	

(3) 광역공소청장이 관계 기관(지방공소청 및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심의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22조의5제6항) 및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22조의5제7항)은 현행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5조²²⁾을 상향입법하려는 것으로 영장 청

22)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구 및 신청 과정의 민주적 통제와 기관 간 이견 조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마.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수사절차 신설(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 197조의5)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을 요청할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도록 함(안 제197조의5).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신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타 기관 통보 및 이첩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로서 긍정적인.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 안 제197조의5제2항은 이첩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 및 그에 따른 사건 이첩에 관하여는 이미 개별 법률에서 그 관계를 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²³⁾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중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게 하되,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²⁴⁾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2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안 제197조의5제2항은 이러한 개별 법률의 규정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이첩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와 정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기관 간 관할의 충돌이나 이첩 요청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이첩에 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기보다는, 개별 법률에 규정된 수사기관 간 이첩 관계를 존중하는 한편, 수사기관 간 수사가 경합할 경우 수사관할에 대한 조정절차를 규정한 안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아울러 안 제197조의5제1항의 “소속 공무원”이 수사업무와 무관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바, 통보 및 이첩의 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을 사법경찰관 등 실제로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바. 공소심의회 설치(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46조의3~제246조의7)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46조의3부터 제246조의7까지는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 및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신설>	제246조의3(공소심의회 설치)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0명 이내 심의위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후보예정자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심의위원후보예정자 및 예비 심의위원을 포함한다)의 자격 요건, 제외 사유 및 무작위 추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

<신 설>

로 정한다.

제246조의4(심의의 신청 및 시기) 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2.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건에 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력형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2.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 범죄 사건

3.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 중요 강력 사건 및 성폭력 사건

4.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5.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6. 기타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건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크게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남용 신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하지

<신 설>

아니하고 결정으로써 이를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246조의6제1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제246조의5(심의절차 등) ①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에게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외에 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심의회의 독립적인 심리와 법률자문을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에 있지 아니한 변호사 중에서 심사보조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6조의6(의결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9명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가 의결로써 검사의 처분과 다르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처분과 다른 결정이 있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공소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지정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변호사의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때

<신 설>	에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지정변호사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기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⑦ 지정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7(재정신청과의 관계 등) ① 심의회의 심의 신청, 심의 및 의결은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중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심의회의 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은 제24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공소청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거나 심의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제246조의4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	--

개정안은 법원에 관할 구역 거주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천하여 선정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소심의회의에서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기소배심제’ 또는 ‘대배심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배심(Grand Jury)’은 형사사건에서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배심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배심’이라고도 함. 이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써 12세기의 클라렌돈법(Assize of Clarendon)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19세기 이래 비판이 많아져서 1933년에 폐지되었음.²⁵⁾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대배심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요구하나, 각 주 별로 기소 결정에 대배심이 요구되는지는 차이가 있음.

i)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요구하는 4개 주,²⁶⁾ ii) 중죄에 대하여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요구하는 14개 주,²⁷⁾ iii) 사형 또는 무기형 이상의 죄의 경우에 대배심에 의한 기소를 요구하는 5개 주,²⁸⁾ iv) 대배심에 의한 기소가 선택적인 주가 26개 주임.²⁹⁾ 대배심 기소가 선택적인 코네티컷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형사 기소에 대한 대배심제 사용은 폐지하고 수사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있음.³⁰⁾

25) 영국에 있어 대배심(grand jury)의 주요한 기능은 순회재판소 또는 사계재판소에 있어서 재판해야 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식기소장안을 심사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대배심의 이러한 기능은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에 의한 예비심문절차가 보편적인 제도로 됨과 함께 예비심문과 중복하는 것으로 되어 1933년의 사법행정법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33]과 1948년의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48)에 의해 폐지되었음.(이재석, 영국의 사법에서의 시민참여, 사회과학연구 9권 1호,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9쪽)

26) 뉴저지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버지니아 주

27) 알라바마 주,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 켄터키 주, 매사추세츠 주, 메인 주, 미시시피 주, 뉴햄프셔 주, 뉴욕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오하이오,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주, 워싱턴 특별구

28) 조지아 주, 플로리다 주, 루이지애나 주, 미네소타주, 로드아일랜드 주

29) 박형관, 미국 대배심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논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2023. 6.), 79쪽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대배심은 i) 형사절차의 측면에서 비능률성,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기소 지연이 문제되며, ii) 대배심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검사의 공소권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개정안의 공소심의회는 i) 심의절차가 검사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대배심과 달리, 피의자, 피해자·고발인 및 공소심의회 직권으로 개시되는 점, ii)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대배심과 달리, 불기소결정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제도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설치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됨.

1) 법원의 형사소송절차에 이르기 전에 수사와 기소에 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을 판단자로 하는 제도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과 기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검사가 공소권 행사를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임.

2) 고발인의 고발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는 점

30) 박형관, 앞의 논문, 79-81쪽

에서, 공소심의회 심의를 통해 고발인의 권리 보호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검사의 공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와 중복될 수
있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검사의 공
소제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형식요건과 실제
요건을 심리하여 종국재판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형사소송법」³¹⁾은 국가소추주의 및 검사의 공소권을 규정
하면서, 그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재정신청제도’와 「공소청법」 제
57조³²⁾에 따른 공소청 내부의 ‘항고제도’ 및 같은 법 제21조³³⁾에

31)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32)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공소청법」

따라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개정안 제246조의7에서 재정신청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의제도(안 제246조의4제1항제1호)는 특히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제도와 본질적으로 중복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둘째, 공소심의회가 갖는 권한의 범위와 그 결정의 효과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따른 공소심의회는 법원에 설치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법원이나 법관이 아닌 점에서 국가의 소추권 및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과 책임이 있는 법원의 권한과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공소심의회의 심의 대상을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6조의4제5항), 공소심의회의

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2. 공소 제기 여부
 3. 상소 제기 여부
 4.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방법 및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⑧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안 제246조의6제6항)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공소권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중극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소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대상을 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국가소추권, 검사의 공소권을 법원의 위원회가 대신하는 문제가 있음.

더욱이, 법원이나 법관이 아닌 공소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소심의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명백한 권한남용일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구제하는 절차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음.

셋째, 공소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소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사기능,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소심의회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참고인 등의 불출석 등에 대하여 공소심의회의 조사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자기부죄거부권과 같은 형사절차상의 본질적인 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의자 등이 공소심의회 심의 과정에서 행한 진술의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소심의회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격사유, 기피, 해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사.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58조의2)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58조의2는 “피의자”에게 제258조제2항34)의 불기소처분과 타관송치 처분의 통지 시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신 설>	제258조의2(피의자의 재정신청) ①제25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피의자는 그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③결정의 취소를 기각하는 제2항의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반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소청법」 제57조³⁵⁾에 따른 공소청 내부의 항고제도와 「형사

34)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5)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

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裁定申請) 제도를 살펴보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등을 할 수 있음. 그리고 항고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친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³⁶⁾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제도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제도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가 채택하고 있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억제하고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인 ‘고소인’ 및 ‘고발

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와 달리 '피의자'의 경우에는 공소청 내부 및 법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그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일종이지만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에게 사실상 불이익³⁷⁾을 주는 '기소유예처분'³⁸⁾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³⁹⁾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불복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려는 취지인데,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사실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한 사법적 통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권리구제 수단을 확 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⁴⁰⁾ 보장을 강화할

37) 기소유예처분은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으로,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범죄의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소제기되면 헌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초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범죄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이 더는 이를 재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한 것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됨.

38)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9)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수 있음.

현행 헌법소원 제도는 공권력 작용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헌법재판의 본질상 그 심사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바,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절차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이를 헌법재판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통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소유예처분 등 검사는 불기소처분은 형사절차인 수사절차의 종국처분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공소청 자체적으로 해당 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제도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억제하고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 담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항고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양 제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40)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있음.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절차를 신설할 경우,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에 대한 항고전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의 심급과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급 체계 및 대법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58조의2제1항),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제415조⁴¹⁾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58조의2제3항).

‘고소인’과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른 ‘피의자’의 재정신청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게 되어, 동일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누가 재정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심급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더욱이, 지방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심급제도의 취지와 고등법원·항고법원 등의 상고사건·재항고사건 등에 대한 중심을 대법원의 심판권한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의 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⁴²⁾

41)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2)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큰 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셋째,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기소처분 관련 불복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오히려 사건 총량 및 사법 영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불복절차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음.

현재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또한 방대한 사건 수로 인하여 심각한 업무 부담과 재판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바,⁴³⁾ 기소유예처분 관련 사건의 법원 이관은 법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개정안에 따라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경우, 법원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건 총량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음.

나아가, 최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됨에 따라, 3심에 걸친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가능해졌는바,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구제 취지에서 위와 같이 사법 영역의 업무 가중이 필요한 입법적 조치인지를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43) SBS, “‘법원장이 직접 재판’...‘재판 적체’ 해소 총력전”, 2024. 3. 27. 기사 등

아. 재정신청제도 개선

1) 재정신청 대상 확대(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0조)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0조는 현행법상 i) 모든 범죄에 대한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⁴⁴⁾에 대해서는 ‘고발인’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정신청권자를 ‘모든 범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으로 확대하고(안 제260조제1항), ii)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26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iii) 법원이 재정신청 심리 및 결정 시 재정신청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0조(재정신청) ① <u>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u>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제260조(재정신청) ① <u>고소 또는</u> ----- ----- ----- -- <u>자는</u> ----- -----

44)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u>지방검찰청</u> 소재지를 관 할하는 <u>고등법원</u>(이하 “관할 고등법 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 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u>10일 이내</u>에 <u>지방검찰청검사장</u>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 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 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 ----- <u>지방공소청</u> ----- ----- <u>지방법원</u>(이하 “관할 지방 법원”----- ----- . <단서 삭제> ----- ②----- ----- 「공소청법」 제57조-----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u>30일 이내</u>에 <u>지방공소청장</u> -----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재정신청권자를 ‘모든 범죄의 고소인·고발인’으로 확대
 하여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외부적 통제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폐
 해를 억제하고 공소권 행사의 공정성 담보하기 위한 것임.

헌행법 제247조⁴⁵⁾는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도 검사가 「형법」 제51조⁴⁶⁾에 따른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소편의주의를 따르더라도 검사의 소추 재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현행법은 그 장치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고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하는 재정신청(裁定申請)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⁴⁷⁾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및 기소독점주의(국가소추주의⁴⁸⁾)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소인 등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⁴⁹⁾

한편,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45)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6)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47) 노태악 외, 「주석 형사소송법-제2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8, p. 889.

48)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49) 배종대·홍영기, 「형사소송법」(제2판), 홍문사, 2020. 8., p.191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제도를 둘 것인지, 재정신청제도를 둘 경우 그 신청대상범죄를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⁵⁰⁾

현행 제260조제1항⁵¹⁾상 재정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고,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죄 등)에 대해서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고소인 등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검찰청법」 제10조⁵²⁾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는바, 이를 “검찰항고 전치주의(前置主義)”라 함.⁵³⁾ 재정신청에 검찰항고 전치

50)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결정

51)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52)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3)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의를 도입한 취지는 재정신청 이전에 고소인에게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에게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⁵⁴⁾

참고로, 법원의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2020~2024년)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접수 25,353건에 처리 29,774건이며, 처리건수 중 공소제기결정은 124건(0.42%)임. 최근 5년간의 실적을 보더라도, 재정신청의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공소제기결정’ 건수 비율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법원의 재정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당해연도 접수	당해연도 처리				
		합계(A)	공소제기결정(B)	(B/A)	기각	산청취소기타
2020	28,883	28,492	167	0.59%	28,093	232
2021	17,295	18,812	116	0.62%	18,556	140
2022	14,468	12,637	86	0.68%	12,415	136
2023	21,139	18,677	121	0.65%	18,378	178
2024	25,353	29,774	124	0.42%	29,536	114

자료: 사법연감(통계) 자료를 정리(<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442M02&l=N&c=900>)

개정안은 재정신청권자를 ‘모든 범죄의 고소인·고발인’으로 확대하여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외부적 통제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자의적 기소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인정됨.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54) 노태악 외, 앞의 책, p.892

다만, 다음의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모든 고발범죄에 대한 소추권 행사 여부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고발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한다는 점,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한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⁵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개정안과 같이 재정신청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법원의 업무부담 증가로 재정신청을 비롯한 각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 및 효율적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과 관련해서는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재항고 제도”와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음. 「공소청법」 제57조제1항⁵⁶⁾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

55) 탄핵주의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추주의라고도 함. 탄핵주의에서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됨.(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3. 8, p.388)

56)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광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고, 제3항은 검찰항고 기각 처분 등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현행법상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① 고소사건 및 특정 고발사건(「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의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과, ② 그 외의 일반적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이 광역공소청장 항고를 거쳐 검찰총장에 재항고하는 두 가지 방식임.⁵⁷⁾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모든 범죄 고소인·고발인에게 법원에의 재정신청을 허용할 경우 재정신청권자의 재항고를 제한한 「공소청법」 제57조제3항이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 심사 시 이와 같은 법률 간 충돌 가능성 및 체계정합성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재정결정 유형에 재수사결정 추가(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2조)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2조는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결정유형으로 기존의 ‘공소제기 결정’ 외에 ‘재수사 결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57) 이준보·이완규,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박영사, 2017, p.351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생략)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u>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u>	②----- ----- ----- --. 이 경우 제294조제1항 및 제295조를 준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u>공소제기</u> 를 결정한다.	2. ----- -- <u>공소제기</u> 또는 <u>재수사</u> 를-----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u>결정</u> 을 한 때에는 관할 <u>지방검찰청검사장</u>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 ----- <u>지방공소청장</u> ----- -----. ----- <u>재수사 결정</u> ----- <u>지방공소청장</u> ----- -----.
⑥ 제2항제2호의 <u>결정</u> 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u>지방검찰청 검사장</u>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u>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u> <후단 신설>	⑥----- <u>재수사 결정</u> ----- ----- <u>지방공소청장</u> ----- ----- ----- 관할 수사기관에 <u>재수사를 요청하여야</u> ----- . 이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u>재수사</u>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의 종류에는 ①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인정됨.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 두가지 결정 이외에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재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종류를 추가하여,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된 사건의 공소제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강제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재정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결정은 기각결정과 공소제기 결정뿐인데, 만약 재정법원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소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수사기록 만으로는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었음.

적법절차가 중요시되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현행법이 명백하게 재정신청절차에 대한 재정법원의 결정으로 신청기각과 공소제기결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에 대하여 수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 재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거나 증거를 조사하여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기각결정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검사에 대하여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나 보충수사를 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수사결정을

추가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고소인·고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⁵⁸⁾⁵⁹⁾

다만, 재정신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i) 재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심판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지 그 전제가 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과 ii)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바와 같이 법원이 행정기관인 지방공소청장 및 수사기관에 대해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를 명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사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의 재수사 결정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58) 참고로,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독일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신청기각이나 공소제기결정 이외에 수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독일의 츠바이브뤼켄 주 고등법원은 감금죄로 고소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소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기소강제절차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소강제절차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개시 명령을 내린바 있음(박홍식,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4권 1호, p.491.)

59)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과 같이, ① 청구기각 결정과 ② 심판회부의 결정의 2가지 유형만 있음.

「일본 형사소송법」

제266조 재판소는 제262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다음의 구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거나 혹은 청구권 소멸 후에 된 것일 때 또는 청구가 이유가 없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재정신청 제도의 존재 의의를 살리려는 입법취지와 법원과 행정기관인 지방공소청장 및 수사기관과의 상호관계, 검사의 수사권 폐지 및 수사지휘권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공소유지담당변호사 도입(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4조의3)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64조의3은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있어 사건을 공소제기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이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 정한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신설>	제264조의3(공소유지담당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 제2항제2호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사건기록을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④ 법원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 경비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안은 2007년 개정 전 구 「형사소송법」⁶⁰⁾에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재정신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제도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 담당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현행법과 같이 재정신청이 이유있는 때 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것은 ①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을 유지하고, ② 재정법원의 역할을 불기소처분의 당부심사에만 한정하게 하고 이후 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여 소추와 심판의 분리원칙의 훼손을 방지하며, ③ 검사는 객관의무 및 공익적 지위에서 사안에 따라 피고소인의 권리와 이익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강조함에 따른 것임.⁶¹⁾

60) 구 「형사소송법」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법원은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이 그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④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써 정한 액의 보수를 받는다.

61)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그러나,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무가 없고, 이미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이 다시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검사 이외의 중립적인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공소유지 변호사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신청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소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있고, 공소유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을 파악하는데 시간적 소모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⁶²⁾

62) 이상한, “피해자참여권 보장을 통한 재정신청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9. 10., p.280.

자. 명칭변경

두 개정안 모두 2026. 10. 2. 시행되는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함.

[명칭 변경 대상 조문⁶³⁾]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62조 검사에 의한 송달	제62조 검사에 의한 송달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제256조 타관송치	제256조 타관송치
제260조 재정신청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1조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262조 심리와 결정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60조 집행지휘	제460조 집행지휘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63) 법률안 조문 대비표 참조 p. 00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471조 동전	제471조 동전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두 법률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검찰청검사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다만, 개정되는 「공소청법」은 기존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검찰청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부재함. 그에 따라 검찰청을 통칭하는 의미의 문언 또한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를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각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제1편(총칙) 및 제2편제3장(공판): 검사 관련 권한 삭제

두 개정안은 모두 영장집행 지휘권자, 영장집행의 주체, 재판장의 수사촉탁의 대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권자, 고소·고발 수령권자, 구금·압수·압수물 환부 처분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있음.

[수사권 조정 대상 조문 및 주요 변경내용 64)]

현행 조문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32조의2 대표번호인	대표번호인 지정을 검사에서 사경으로 변경	현행 유지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검사의 지휘 없이 <u>사경이 구속영장 집행</u>	<u>검사의 촉탁을 받아 사경이 구속영장 집행</u>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검사의 관할구역 외 구속영장 집행 지휘 조항 삭제	검사의 관할구역 외 구속영장 집행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
제84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 현재지 불명 시 재판장이 수사촉탁하는 대상을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피고인 현재지 불명 시 재판장이 하는 촉탁의 범위에서 수사 삭제
제115조 영장의 집행	검사의 지휘 없이 <u>사경이 압수·수색영장 집행</u>	<u>검사의 촉탁을 받아 사경이 압수·수색영장 집행</u>
제137조 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138조 준용규정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집행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물 환부 결정 주체를 사경으로 변경	압수물 환부 결정 주체를 사경으로 변경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의 고소·고발사건 처리기한을 사경의 수사종결기한으로 변경	검사의 고소·고발사건 처리기한(3개월)을 사경의 수사 종결기한(2개월)으로 변경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검증조서 조항 삭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검증조서 조항 삭제

64) 법률안 조문 대비표 참조 p. 00

현행 조문	차규근의원안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417조 동전	구금·압수·압수물 환부 처분의 주체에서 검사 삭제	구금·압수·압수물 환부 처분의 주체에서 검사 삭제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현행 유지	재판 집행에 필요한 조사권한을 조치권한으로 변경

두 법률안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영장의 집행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영장의 집행지휘권을 삭제하여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첫째,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제81조제1항에서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를 사경에 대한 “영장집행 촉탁”으로 개정하고 있는바 ‘지휘’와 달리 ‘촉탁’은 사경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어 사경이 업무 과중 등으로 집행을 거부할 경우 실무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단서 조항의 경우 급속을 요하여 수탁관사 또는 수명법관이 직접 영장 집행을 지휘하였던 것이었으나 이 경우에도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영장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拘束令狀은 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が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第81條(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관사가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둘째, 개정안 제312조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참고인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는 사경이므로 “사법경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안 제218조의2는 압수물 반환에 대한 처분권을 사법경찰관에 부여하면서 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는 실무상 강제력이 없어 압수물 환부, 가환부 처분을 수사기관이 검사와 협의만을 통해 처분하는 경우 공소유지에 필요한 압수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②(생략) ③ <u>검사 이외의 수사기관</u>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②(생략) ③ <u>수사기관</u> ----- ----- ----- ----- -----.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u>검사는</u>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u>사법경찰관은</u> 검사와 <u>협의하여</u> ---- ----- ----- ----- ----- -----.

5. 수사절차 관련 신설 내용

가.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신설(안 제73조, 제201조)

1) 개정안의 검토

개정안은 법원이 제98조 각 호의 조건⁶⁵⁾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해당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피고인 조건부석방, 안 제73조),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의 조건 또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해당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피의자 조건부석방, 안 제201조).

현 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第73條(令狀의 發付) (생략)	第73條(令狀의 發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법원은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구속

65)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신 설>

第201條(拘束) ①被疑者が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の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② ~ ④ (생 략)

⑤檢事が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의 조건을 정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2조부터 제104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第201條(구속 및 조건부 석방)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수 있다.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2.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 또는 증거

인멸 방지,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

인 등 보호를 위하여 지방법원판사

가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⑥ 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로 석

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는 제9

8조부터 제100조의2까지, 제102조부

터 제104조의2까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부터 제3

1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

항에 따른 조건부 석방에 관한 권한

은 공소제기 전에는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행사한

다.

⑧ 검사는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석방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

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⑨ 검사 또는 피의자는 제5항에 따른

<신 설> <신 설> <신 설>	<u>조건부 석방의 석방조건이 부적절함을 이유로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석방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뿐 석방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u> <u>⑩구속적부심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9항의 항고는 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u> <u>⑪제9항에 따른 항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u> <u>⑫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u>
--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01조제1항⁶⁶⁾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게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고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

66)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함.⁶⁷⁾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198조제1항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한 원칙으로 해석되어 온 것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판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강제처분으로 그 여부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담겨 있음.⁶⁸⁾

참고로 2018~2025년도 구속영장 청구·발부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수 및 발부수는 2021·2022년까지 하락하다가 2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청구 대비 발부율은 약 80% 내외에서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구속영장 제도에 따르면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는 구속과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바, 구속과 불구속 경계에 있는 사건들의 경우 사안의 차이에 비하여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현격한

67) 「형사소송법」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8)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8., pp.141.-142.

차이가 초래되어 사안별로 비례성 심사에 따른 다양한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구속영장 청구, 기각, 발부,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체사건 접수	2,302,601	2,391,529	2,255,553	1,362,685	1,490,303	1,515,419	1,610,639	1,544,778
청구	30,061	29,647	25,770	21,983	22,588	26,266	27,931	27,897
전체사건 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	1.3	1.2	1.1	1.6	1.5	1.7	1.7	1.8
발부	24,446	24,018	21,098	18,064	18,364	20,882	21,469	21,862
발부율(%)	81.3	81.0	81.9	82.2	81.3	79.5	76.9	78.4
기각	5,594	5,587	4,656	3,895	4,201	5,346	6,401	5,887
기각률(%)	18.6	18.9	18.1	17.7	18.6	20.4	22.9	21.1
구속점유율(%)	1.1	1.0	0.9	1.3	1.2	1.4	1.3	1.4

주: *구속영장 청구인원 = 검사직접청구 구속영장 인원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

*구속영장 발부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 인원 비율

*구속영장 기각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기각 인원 비율

*구속점유율(%) = 전체사건 접수(신수)인원 대비 구속인원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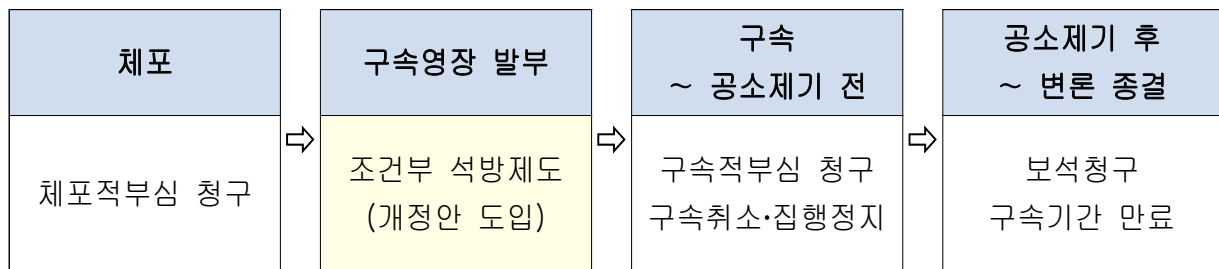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검찰통계시스템)

이에 개정안은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뿐만 아니라(안 제201조) 공판단계에서 법원의 직권 영장 발부(안 제73조) 단계까지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이른바 “조건부석방 구속제도”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판사는 “영장기각”, “조건부 영장발부”, “구속영장 발부”라는 세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조건부석방 도입 시 구속요건 중 피의자 도주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

호한 경우에 보증금 납부나 주거제한 등의 조건으로 도주 우려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사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형사절차상 각 단계별 인신구속에 대한 석방제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조건부석방 구속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다양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구속수사 비율을 낮추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부합하며, ③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하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구속의 사유가 불명료한 상황에서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이 넓어져 남용의 위험이 있고, ② 구속을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생각하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④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석방제도(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의 활용을 통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각각 논거

로 하고 있는바,⁶⁹⁾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조건부석방 구속제도의 도입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구속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출석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협조에 의존하게 되어, 석방된 피의자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회피할 경우 수사의 차질이나 수사기간의 장기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⁷⁰⁾는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보증금납입부 석방, 기소 전 보석).

이는 기소 후의 보석제도의 취지를 기소 전 수사단계에까지 확대하여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로 도입된 것인바,⁷¹⁾ 조건부석방은 기소 전 보석과 그 취지 및 기능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음.

69) 사법정책연구원,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2023. 4. 21.

70)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71) 노태악 편집대표, 전거서, p.391.

[보증금납입부 석방, 보석과 조건부 석방 구속제도 비교]

구 분	보증금납입부 석방	보석	조건부 석방 구속
근거 조문	제214조의2제5항	제94조~제100조의2	안 제73조·제201조
성격·단계	구속적부심 절차 내에서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공소제기 후 피고인 구속 해제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조건을 붙여 석방
적용 대상	구속된 피의자	구속된 피고인	피고인(안 제73조), 피의자(안 제201조)
재량 여부	재량 (증거인멸 염려 등 있을 경우 불가)	원칙 필요적 보석 예외 임의적 보석	재량
석방 조건	주거제한, 출석의무 등	제98조 각 호의 조건 (서약서, 보증금, 주거제한, 출석보증서)	제98조 각 호의 조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항고	보통항고 가능 ⁷²⁾	보통항고 가능	가능 (단, 조건변경만 가능, 석방 자체 취소 불가)

다만, 조건부석방은 보증금 납입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98조 각 호의 조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까지 조건으로 정할 수 있어 석방조건의 범위가 보다 넓고, 구속영장의 발부와 동시에 석방을 명하는 구조이므로 구속된 피의자를 사후에 석방하는 기소 전 보석에 비하여 인신구속의 해소 시기가 앞당겨지는 측면이 있음.

이처럼 두 제도가 기능적으로 중복되면서도 조건부석방이 그 요건과

72) [대법원 1997. 8. 27.자 97도21 결정]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3항의 석방결정과 제4항의 석방결정은 원래 그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고, 또한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보석결과와 성질 및 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같은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효과에 있어 기소 전 보석을 상당 부분 포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조건부석방 구속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이에 통합·정비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압수·수색 시 참여권 구체화(안 제122조제2항,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30조의2)

개정안은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참여권자가 진술한 의견, 압수목록, 압수물의 보관·폐기 등 압수조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참여권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집행의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 시 참여권자의 참여권을 구체화함(안 제122조제2항, 제123조의2, 제123조의3, 제130조의2).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생략) <u><신설></u>	第122條(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21조에 규정된 사람에게 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23조의2(영장집행과 의견 진술) 피고인, 변호인 및 제123조 각 항에 규정된 사람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u><신설></u>	제123조의3(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123조의2에 규정된 사람에게 압수·수색영장

<신 설>	의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23조의2에 따라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자가 의견을 진술한 때 2. 제128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제129조에 따른 목록을 교부한 때 3. 제130조에 따른 처분을 한 때
--------------------	--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장소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나, 당사자의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⁷³⁾

이에 개정안은 제123조의2 및 제130조의2를 신설하여 압수·수색 참여권자의 참여 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의견 진술 시 해당 취지를 압수·수색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의 적정성·적법성을 준수하고 피압수·수색 집행을 받는 당사자 등을 더욱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73)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안 제 122조제2항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금 영장의 집행일시·장소를 통지하고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123조의3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집행절차 및 그 방법 등 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바,

이는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증거물의 인멸·훼손 염려 등이 있어 참여권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일단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이는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여 이를 분석하는 행위까지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판례의 태도⁷⁴⁾와도 일치함.⁷⁵⁾

74)[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도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75)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2015. 12), p.289.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 현행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22조제2항은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해소된 경우,
당사자등에게 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로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영장 집행의 일시·장소를 단순히 고지(통지)하는 행위 외에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별도 의무를 독자적
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참여 기회 부여
의 구체적 방법과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등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방법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 현행 제122조 단서는 당사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
사를 명시한 때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안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영장
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이는
당사자가 종전의 참여 포기 의사를 번복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당사자의 단순한 변심 등 주관적 의사에 따라 이미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 목적물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종래 ‘유체물’이 아닌 ‘전자정보’ 자체가 우리 형사소송법 해석상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었는바, 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 1190 결정⁷⁶⁾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전자정보’ 그 자체가 압수 대상을 전제로 선별압수 원칙 등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라고 표현하여, 여전히 법률 문언상으로는 무형의 ‘전자정보’가 아닌 유형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의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음.

76)[대법원 2011. 5. 26.자 2009도1190 결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41조제1항⁷⁷⁾에서는 ‘전자정보’를 압수 목적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과의 체계상 불일치는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 제106조제3항의 개정 없이 안 제123조의3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물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전자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제106조제3항과 체계상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현행법상 압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수사의 밀행성·신속성 및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 제123조의3의 예외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때” 등을 예외사유로 명시함으로써 초동 단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23조의3은 참여권자에게 영장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긴급·예외사유를 두

77)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정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고 있지 않음.

전자정보는 원격 삭제나 변경이 용이하여 신속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외조항의 부재는 수사의 밀행성을 저해하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낮출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123조의3의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제122조 단서에 준하는 예외사유를 병행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등 현행 제122조와 안 제123조의3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안 제215조의2, 제215조의3)

개정안은 압수·수색 시 수사기관에 대한 심문절차를 신설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영장발부 시 법원의 사전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5조의2 및 제215조의3 신설).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u><신설></u>	제215조의2(압수·수색의 심리) 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는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신설></u>	제215조의3(전자정보에 대한 영장 청구 시 기재사항) 검사가 제215조에 따른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그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 정보의 검색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구체적 집행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최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디지털 증거의 양이 급증하면서 강제수사 중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높아진 결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316,611건에서 2024년 535,576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발부율은 2020년 이후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⁷⁸⁾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발부, 기각 현황]

(단위: 건)

구분	청구	발부	일부기각	기각	발부율(%)
2020	316,611	288,730	24,806	3,075	91.2
2021	347,623	317,496	27,039	3,088	91.3
2022	396,807	361,613	31,576	3,618	91.1
2023	457,160	414,973	37,213	4,974	90.8
2024	535,576	488,192	42,032	5,352	91.2
평균	410,755	374,201	32,533	4,021	91.1

주: 발부율은 청구 대 발부의 비율임

자료 :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반면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요건으로 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및 ② 사건과의 관련성만을 요구하고 있어 체포·구속에 비해 완화하고 있고, 압수·수색영장 심리 시에는 구속 전 피의

78)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5. 9., 906p 이하

자심문제도와 같은 대면심문제도가 아니라 서면심리로만 진행되어 피압수자의 기본권 과잉 침해 및 별건 압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음.⁷⁹⁾

이에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과정에 대면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전자정보인 경우에는 사용할 검색어, 검색의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영장 청구 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 영장발부 시 법원의 사전규제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피압수자 등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안 제215조의2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기일을 정해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영장 발부의 시기 지연 등 수사의 신속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 및 참고인이 영장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 착수 여부 등 수사의 밀행적 진행 상황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안 제215조의3은 전자정보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대상기간 등 선별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영장 문

79) 유선희·김나연, “[단독]법관 10명 중 6명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해야””, 경향신문, 2024. 10. 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70924001#ENT>, 최종검색일: 2026. 7. 4.

언으로 엄격히 제한할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예컨대,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피의자가 의도적인 오탈자, 은어, 축약어 또는 암호화된 키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은닉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검색어의 한계로 인해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후 변경된 검색어로 재차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으로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구체적 집행계획을 영장 문언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기보다는 이를 영장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그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검색어의 경우에도 이를 빠짐없이 열거하도록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위주로 기재하게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신설(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44조의2)

김용민·박은정의원안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을 의무화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

현행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u>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u>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u>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u>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녹음·영상녹화) ① <u>피의자의 진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하여야 한다.</u> ----- - <u>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될 수 있도록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최초의 진술-----</u> ----- <u>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녹화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바, 개정안은 피의자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최초 진술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녹음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요인이나 부당한 회유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1)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⁸⁰⁾이나 기억 환기 등의 용도⁸¹⁾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며,⁸²⁾ 수사기관 작성 녹음물의 증거능력·용도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⁸³⁾

따라서, 개정안이 피의자 진술의 전 과정 녹음을 의무화하면서도 해당 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

80)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8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82) 판례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83) 서태경, “피고인의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한양법학 제26권 제4집(통권 제52집) 2015.11., pp.86.-90.

니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개정안은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녹음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사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수사 실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아울러 모든 진술을 빠짐없이 녹음·녹화하기 위하여는 각 수사기관이 이에 필요한 녹음·녹화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이를 일시에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녹음·녹화 대상이 되는 진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장비·설비 등 집행 여건을 함께 검토하여 수사단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부칙

안 부칙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일(김용민·박은정의원안 부칙 및 차규근의원안 부칙 제1조),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 조치(차규근의원안 부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차규근의원안 부칙 제3조)를 규정하고 있음.

1) 시행일(김용민·박은정의원안 부칙 및 차규근의원안 부칙 제1조)

김용민·박은정의원안 및 차규근의원안은 모두 「공소청법」⁸⁴⁾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⁸⁵⁾의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용민·박은정의원안	차규근의원안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 수사권의 원칙적인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입법에 맞춰 형사절차를 개편·정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소청법」 등의 시행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공소청법」에 따른 검찰청 폐지, 공소

84) 2026. 3. 24. 법률 제21490호로 제정되어 2026. 10. 2. 시행 예정

85) 2026. 3. 24. 법률 제21491호로 제정되어 2028. 10. 2. 시행 예정

청의 신설 및 검사의 직무 범위 변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의 그 밖의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① 검찰 개혁과의 밀접성 및 제도 개선의 시급성, ② 제도 개선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 ③ 관련 대통령령 및 대법원 규칙의 개정 등 시행 준비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차규근의원안 부칙 제2조)

차규근의원안
제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차규근의원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소청법」 부칙 제6조⁸⁶⁾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86)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한 처분·행위 등이나 검찰청에 대한 처분·행위 등 중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관한 처분·행위 등은 각각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처분·행위 등 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한 처분·행위 등으로 본다.

그런데,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며, 「공소청법」 신설 및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검사의 사무와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정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거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사무 및 권한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 반영된 것도 아닌 점에서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사무 및 권한의 변경과 관련하여, 검사의 처분·행위, 작성한 조서 등의 효력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다른 법령과의 관계(차규근의원안 부칙 제3조)

차규근의원안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차규근의원안 부칙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부칙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폐지·제정이나 법률 제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석상 혼란과 이해하는

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규정인 점에서,⁸⁷⁾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권한 및 사무가 변동된 사항은 해당 부칙과 같이 종전 규정을 갈음하여 인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는 해석상 혼란의 해소할 수 없는 점에서, 해당 부칙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4)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의 정비 필요

김용민·박은정의원안 및 차규근의원안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바,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180여 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검사에게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검사 고발제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⁸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⁸⁹⁾ 등), 전담 수사제도(「공직선거법」 제9조,⁹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⁹¹⁾ 「선원법」 제127조,⁹²⁾ 「성폭력범죄의 처

87)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919쪽

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고발)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8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90)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9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제4조(수사에 대한 협력)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가 요청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

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⁹³⁾ 등), 직접수사 전제 기소유예제도(「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⁹⁴⁾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⁹⁵⁾ 등),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⁹⁶⁾ 「범죄인 인도법」 제19조⁹⁷⁾ 등)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정비대상 관련 법률규정 중 단순개정 사항이 아니라 ‘전담 검사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제도’⁹⁸⁾와 같이

을 행사할 수 있다.

92) 「선원법」

제127조(사법경찰권)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問) 등 수사는 오로지 검사(檢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9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95)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9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97)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의 실제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검찰청’의 소관 사무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으로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정비는 이 법의 개정사항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이 법의 부칙으로 개정할 사항이 아닌바,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및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맞춰 해당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063,5053,5056